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1장 총칙	2
제2장 동아리연합회장, 동아리연합부회장	3
제3장 분과장	4
제4장 의결기구	
제1절 동아리대표자회의	4
제2절 운영위원회	6
제5장 집행기구	
제1절 집행부	6
제2절 분과회의	7
제6장 재정	
제1절 예산	7
제2절 동아리지원금	8
제7장 선거	9
제8장 등록	10
제9장 활동점수	11
제10장 동아리 승격	11
제11장 징계	
제1절 통칙	12
제2절 징계의 내용	12
제3절 징계의 절차	13
제12장 동아리방	14

부칙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위치

이회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하며 숭실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 목적

- ① 본회는 창조적 대학 문화를 담당해 가는 전 동아리원을 결집하여 민주적이며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올바른 대학 문화 창달과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회는 전 동아리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동아리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동아리와 회원

- ① 동아리는 대학 생활 중 취미 및 여가 활동을 목적으로 일정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본회의 등록을 필한 단체를 말한다.
-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등록한 전 동아리의 구성원으로 한다. 본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과대 소속 소모임, 기관 동아리 등은 본회의 회원으로 하지 않는다.
- ③ 본회에 등록한 동아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동아리연합회 인가 준동아리(이하 준동아리)
 2. 동아리연합회 인가 정동아리(이하 정동아리)
 3. 학교 인가동아리(이하 인가동아리)
- ④ 동아리는 그 성격 및 설립 목적에 따라 교양분과, 연대사업분과, 연행예술분과, 종교분과, 창작전시분과, 체육분과, 학술분과로 구분한다.
- ⑤ 동아리는 동아리 대표자와 동아리 회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개별 동아리 회칙에 따라 임원진을 둘 수 있다.
 1. 동아리는 반드시 동아리 대표자를 두어야 하며, 개별 동아리 회칙에 따라 선출한다.
 2. 동아리 대표자의 선출 및 변경 시, 반드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동아리 회원은 개별 동아리의 회칙에 따라 회원으로 인정된 자로 한다. 단, 회원은 본교 학부생으로 한정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전 회원은 동아리연합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
- ② 본회의 인가동아리와 정동아리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고 준동아리는 선거권만을 가진다.
- ③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 및 회원에 대한 침해가 있거나 정당한 동아리 활동에 침해를 받을 경우 본회의 이름으로 단결권을 행사하여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 ④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 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에 대해 자기 의사를 개진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진다.
- ⑥ 본회의 회원은 장부를 열람할 권리를 가지며, 집행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5조 조직

- ① 본회의 의결기구로 동아리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회를 두며 집행기구로 집행부, 분과회의가 있다.
- ② 동아리연합회장의 발의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특별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조 기록물관리

- ① 본회의 모든 활동은 기록되고 기록물이 각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③ 본회가 생산, 수집하는 모든 기록물의 보관기간은 기록물 처리 완결일 기준 익년 1월 1일부터 3년으로 기산한다.
- ④ 기록물의 생산, 수집 이후 보관 기간에는 해당 기록물에 대해서 어떠한 수정도 가할 수 없으며 훼손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 ⑤ 보관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의 폐기는 세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영구기록물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장 동아리연합회장, 동아리연합부회장

제7조 지위

- ① 동아리연합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동아리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의 의장, 징계위원회 위원장, 동아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② 동아리연합부회장은 동아리연합회장을 보좌하며, 동아리연합회장의 결위 또는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8조 권한

동아리연합회장과 동아리연합부회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권한을 갖는다.

1. 중앙운영위원회 참가 및 의결권
2. 동아리대표자회의 소집권 및 운영위원회 소집권
3. 집행부 임명권
4. 예산집행 승인권
5. 징계 발의권
6. 회칙 개정 발의권
7. 기타 중요 안건에 대한 발의권
8. 징계위원회 소집권
9. 동아리조사위원회 소집권
10. 일반사항 및 긴급사항에 대한 즉결권
 - 가. 일반 사항이라 함은 본회 자체 행사 및 기타 일반 업무를 말한다.
 - 나. 긴급사항이라 함은 동아리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이나 빠른 시행이 요구되는 사안을 말한다.
 - 다. 일반사항 및 긴급사항의 처리는 추후 운영위원회와 대표자회의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9조 임기

동아리연합회장, 동아리연합부회장의 임기는 개표 종료 시점으로부터 이듬해 11월 선거 개표 종료시점까지로 한다.

제10조 권한대행

- ① 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이 모두 결위 혹은 유고하였을 시 해당 연도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을 호선한다. 단, 호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이며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 회원
 2.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자
- ②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을 시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1인을 호선하여 임명한다.
- ③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동아리연합회장 선거 당선자 공고일까지로 한다.
- ④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⑤ 비대위원장은 차기 동아리연합회장 선거 당선자 공고일까지 동아리연합회장의 모든 권한을 대리한다.
- ⑥ 대내외적으로 비대위원장 명칭은 정 권한대행으로 통일한다.

제11조 탄핵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동아리연합회장·동아리연합부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② 동아리연합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위원 4명 이상의 연서
2. 본회의 회원 100명 이상의 연서. 단, 연서에 기재된 소속 동아리의 수는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제2항의 연서를 심의한다.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의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동아리연합회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회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의 직후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④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7일 이내에 동아리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탄핵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때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를 임시의장으로 하고, 해당 동아리대표자회의의 개의 직후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재인준을 받는다.

⑤ 탄핵안은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특별안건에 따라 의결한다.

⑥ 위의 4항에 의해 동아리대표자회의가 소집되었을 경우 그 대상은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기 전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제3장 분과장

제12조 지위

분과장은 각 분과를 대표하여 동아리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13조 구성

각 분과를 대표하여 교양분과장, 연대사업분과장, 연행예술분과장, 종교분과장, 창작전시분과장, 체육분과장, 학술분과장으로 구성된다.

제14조 권한

분과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권한을 갖는다.

1. 동아리대표자회의 소집권 및 운영위원회 소집권
2. 징계 발의권
3. 회칙 개정 발의권
4. 기타 중요 안건에 대한 발의권
5. 분과회의 소집권

제15조 임기

- ① 분과장의 임기는 분과장 당선 시점으로부터 당해 연도 동아리연합회 임기까지로 한다.
- ② 마지막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된 분과장의 임기는 다음 연도 동아리연합회 임기 시작부터로 한다.

제16조 권한대행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분과장이 선출되지 않은 분과의 경우 동아리연합회장이 집행부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의결기구

제1절 동아리대표자회의

제17조 지위

동아리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

제18조 구성

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연합회장을 의장으로 두며,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각 동아리 회장으로 구성된다. 단, 동아리 회장이 부재 시 각 동아리에서 책임이 있는 대표자를 보내 동등한 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 업무 및 권한

동아리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권한을 갖는다.

1. 각 분과와 집행부의 사업계획 심의권
2. 회칙 개정안 발의 및 심의 의결권
3. 신규 동아리 등록에 대한 심의 의결권
4. 운영부서 신설, 통폐합 심의권
5. 분과의 신설·폐지·통합 재편권
6.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안의 심의 의결권
7. 동아리연합회장, 동아리연합부회장에 대한 탄핵권
8. 동아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권
9. 기타 중요 안전에 대한 심의권

제20조 소집

- ① 동아리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최소 연 4회 의장이 소집하며, 추가로 정기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임시회의는 운영위원 4인 이상의 요구와 동아리 대표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 혹은 집행부 4인 중 1인의 발의나 회장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동아리연합회장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대표자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동아리는 의결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없다.

제21조 안전

- ① 안전이라 함은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 ② 처리된 안전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또한 하나의 안전으로 본다.
- ③ 발의된 모든 안전은 특별안전과 일반안전으로 구분된다.
- ④ 특별안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해당되며, 그 이외에는 일반안전으로 구분한다.
 1. 제11조의 동아리연합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2. 제19조의 분과 신설·폐지·통합 재편안에 관한 사항
 3. 제19조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제49조의 신규 동아리 등록에 관한 사항
 5. 제51조 동아리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6. 11장에 따라 상정된 동아리의 징계에 관한 사항

제22조 의결

- ① 일반안전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특별안전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가부동수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하고, 그럼에도 가부동수일 경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한다.
- ④ 동아리대표자회의가 부득이하게 무산될 경우에는 모든 안전들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 ⑤ 의결된 회칙은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찬성을 받을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단, 소급 적용을 하여 피해를 입는 동아리가 발생할 시 소급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제23조 동아리대표자수련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

- ① 동아리대표자수련회 및 동아리대표자워크숍은 본회의 회원들이 참석하는 수련회 및 토론회이며 동아리대표자회의와의 의결기구로서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 ② 동아리대표자수련회 및 동아리대표자워크숍은 원칙적으로 매 방학 중 각 1회 개최한다.
- ③ 동아리대표자수련회 및 동아리대표자워크숍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동아리대표자회의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24조 중요 자치 활동에 대한 회원의 의무

- ① 동아리대표자회의와 동아리대표자수련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은 본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본회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불참한 동아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징계를 적용한다.
 1. 동아리대표자회의, 동아리대표자수련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 중 1회 불참은 주의
 2. 동아리대표자회의, 동아리대표자수련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 중 2회 불참은 지원금 미지급
 3. 동아리대표자회의, 동아리대표자수련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 중 3회 불참은 경고
 4. 동아리대표자회의, 동아리대표자수련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 중 4회 불참은 등록 취소
 5. 임시회의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③ 불참 사유서를 회의 72시간 전까지 제출하였을 경우, 동아리연합회장이 그 사유를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을 때 무효로 한다. 그러나 동아리대표자회의, 동아리대표자수련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 중 2회 모두 불참사유서가 인정된 경우 1회 불참으로 간주한다.
- ④ 동아리연합회장이 그 사유를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음은, 모든 동아리 회원이 동아리 공식 행사에 참여하여 동아리대표자회의, 동아리대표자수련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에 참석할 인원이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25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의결 및 운영기구이다.

제26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장, 동아리연합부회장,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제27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권한을 갖는다.

1. 운영부서의 신설 및 통폐합 발의권
2. 회칙 개정안 발의권
3. 동아리대표자회의 소집권
4. 동아리 승격 심사권
5. 동아리 활동점수 결정권
6. 권한대행 호선권
7. 신규 동아리 등록 심사권

제5장 집행기구

제1절 집행부

제28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로서 각 국의 위상과 원칙은 당해 회장단에서 임의로 구성 및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 구성

집행부는 동아리연합회장, 동아리연합부회장, 국장, 국원으로 구성한다.

제30조 업무 및 권한

- ① 집행부는 본회 일반 업무 및 대표자 회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집행부서는 당해 동아리연합회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절 분과회의

제31조 목적

각 분과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분과에 맞는 활동을 계획, 추진하며 분과 내의 통합력을 높인다.

제32조 구성

분과회의는 각 분과의 소속된 동아리 대표자로 구성되며 각 소속분과는 분과장을 두어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3조 역할

- ① 각 분과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행정 실무를 토의한다.
- ② 본회의 행사를 분과별로 분담해서 주관한다.
- ③ 각 분과의 고유 업무를 의결하고 집행한다.

제34조 소집

- ① 분과회의는 학기당 1회 이상 분과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장은 분과회의를 소집 및 개최하여야 한다. 단, 동아리연합회장이 판단하기에 분과장이 분과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동아리연합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③ 분과장이 공석인 경우 동아리연합회장 또는 동아리연합회장이 지명한 분과장 권한대행이 소집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1절 예산

제35조 수입

- ①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예산으로 한다.
- ② 본회의 행사에서 얻어지는 수익금과 타 단체의 기부금은 본회의 수입이 된다.

제36조 예산편성 및 집행

- ① 본회의 예산편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부가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2. 집행부의 운영비를 10%로 제한한다.
 3.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은 예산집행은 전적으로 동아리연합회가 책임을 진다.
 4. 예산안 인준 결과는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의결 후 7일 이내에 공고한다.
- ②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 ③ 본회의 예산은 1, 2학기로 나누어 집행한다.
- ④ 본회 학생회비의 관리는 회계 관리에 준하며, 그 인출 및 집행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제37조 결산 보고 및 이월

- ① 결산은 동아리대표자회의를 통해 결과 보고 후 7일 이내에 공고한다.
- ② 감사 시 감사 대상 기간은 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 ③ 본회의 회원은 제4조 6항에 따라 장부 열람이 가능하다.
 1. 집행부는 장부 정리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3일을 둘 수 있다. 3일을 넘길 경우 그 이유를 동아리대표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2. 집행부가 장부 열람을 위해 따로 방법을 두지 않는 이상 장부 열람은 동아리연합회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집행부원이 동반한다.
 3. 장부 열람 자격은 각 동아리가 제출한 동아리등록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학생이어야 하며, 학생증으로 신분이 확인되어야 한다.
- ④ 매 학기 흑자예산의 잉여분은 다음 학기로 이월한다.

제38조 환불

- ① 총학생회의 회원이 납입한 총학생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기준일 동안에 환불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회는 총학생회의 회원에게 총학생회비를 환불한다.
 1. 1학기 : 4월 1일 ~ 4월 둘째 주 금요일
 2. 2학기 : 10월 1일 ~ 10월 둘째 주 금요일
- ② 동아리연합회에게 총학생회비를 환불받을 경우, 이체 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는 총학생회의 회원이 부담한다.
- ③ 환불은 계좌 송금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되지 아니한다.

제39조 운영비

- ① 운영비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용 범위를 회칙으로 제한한다.
- ② 운영비의 용도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집행부 회식 등 식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동아리대표자수련회, 동아리 축제, 대동제 같이 동아리연합회 주관의 행사가 동반되어야 하며 한 학기 총 식대 금액은 운영비의 10%를 넘지 아니한다. 답사 등 다른 행사에서 발생한 식대는 운영비가 아닌 해당 행사의 예산에 편성한다.
 2. 접객용 운영비 사용은 사전에 그 단체와 접객 목적에 대하여 본회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한 학기 접객용 운영비 사용 금액은 운영비의 10%를 넘지 아니한다.
 3. 위 1호와 2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아리연합회장의 판단 하에 운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편성된 예산을 넘지 아니한다.

제2절 동아리 지원금

제40조 인가동아리의 동아리지원금

- ① 인가동아리의 재정적 지원은 학생서비스팀의 학예술지원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예술지원금은 학생서비스팀 사무실에 방문해 작성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의하며,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동아리 활동 목적과의 적합성
 2. 집행한 예산의 적합성
 3. 첨부된 증빙자료의 적절성
- ③ 학예술지원금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집행 7일 이내에 학생서비스팀 사무실에 방문해 활동계획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
 2. 예산집행 후 증빙자료를 지참해 학생서비스팀 사무실에 방문해 학예술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 ④ 그 외 학예술지원금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학생처의 공지에 따른다.
- ⑤ 동아리 활동 중 회칙에 저촉되거나 그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학생처와 논의 후 학예술지원금의 삭감 지급 및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다.

제41조 정동아리, 준동아리의 동아리지원금

- ① 정동아리, 준동아리는 본회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회는 예산 중 10분의 1을 동아리 지원금에 할당한다.
- ② 동아리 지원금의 집행은 한 학기에 정동아리는 10만 원 이하, 준동아리는 5만 원 이하로 제한하며 학기의 기준은 본회의 예산회기의 기준에 따른다.
- ③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동아리 자체 예산으로 예산집행
 2. 예산집행 후 7일 이내에 동아리지원금 신청서[별지2]와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본회에 제출
- ④ 제출된 신청서는 집행부에서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동아리 활동 목적과의 적합성
 2. 집행한 예산의 적합성
 3. 첨부된 증빙자료의 적절성
- ⑤ 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시 인정되지 않는다.
 1. 카드 결제 시 사업자 정보, 거래내역, 거래일자, 거래수단, 총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증빙자료
 2. 현금 결제 시 유효번호 혹은 학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⑥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비되었을 경우 동아리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신청 날짜가 동일할 경우 정동아리에 우선순위를 둔다.
- ⑦ 지원금 지급 이후 신청서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동아리는 지원금을 전부 환납하며 감점을 부여한다.

제42조 우수동아리 시상

- ① 본회는 1년의 활동을 바탕으로 우수동아리를 선정하여 동아리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고무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우수동아리 선정은 당해 연도 마지막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선정한다.
- ③ 우수동아리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최종집계된 당해 연도 활동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7개의 동아리를 1차 선정한다. 활동점수가 동률일 경우 모두 후보에 포함한다.
 2. 당해연도에 징계내역이 있는 동아리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3. 1차 선정된 동아리 중 투표를 통해 다득표순으로 3개 동아리에 시상한다.
 4. 득표결과가 동률일 경우 동률인 동아리를 두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④ 본회는 선출된 우수동아리에게 2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이 외의 추가시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선거

제43조 선거권

- ① 선거권은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에 한한다.
- ② 선거권은 한 동아리당 인가동아리, 정동아리의 경우 7인이, 준동아리의 경우 4인이 가지게 된다. 단, 선거인명부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동아리는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44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인가동아리와 정동아리에 한한다.

제45조 동아리연합회장, 동아리연합부회장의 임후보

- ① 정후보와 부후보는 4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한다.
- ② 본회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추천인은 4개 분과 이상과 10개 동아리 이상의 동아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동아리연합회선거관리위원장은 마지막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후보자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기타 제반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6조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 ①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장, 동아리연합부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제반의 업무를 선거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조정할 권한을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최고 의결기관이다.
- ②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장을 위원장으로 두며, 당해 연도 운영위원회와 집행부로 구성된다.
- ③ 기타 제반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7조 분과장의 입후보

- ① 분과장 후보는 2학기 등록을 필한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 마지막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며, 일반안건으로 의결한다.
- ③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분과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재선출한다.

제8장 등록

제48조 동아리 재등록

- ① 동아리 재등록 기간은 매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하며,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동아리의 목적, 활동 계획이 명시된 등록원 1부.
 - 2. 20인 이상의 동아리 회원명부 1부.
 - 3. 동아리 회칙 1부.
- ② 지연 제출의 경우 기한을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로 하며, 지연 제출을 한 동아리는 등급 강등이 결정된다.
- ③ 지연 제출 기간까지 재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동아리는 그 즉시 동아리 해산이 결정된다.
- ④ 동아리 재등록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이 완료된다.
- ⑤ 등록 마감과 함께 동아리연합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해야 한다.

제49조 신규 동아리 등록 자격과 절차

- ① 동아리 등록은 전 승실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여야 하며 본회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 단, 단과대학 산하에 있는 동아리가 본회에 등록하고자 한다면, 단과대학 동아리 등록을 취소하고 전 승실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해야 한다.
- ② 신규 동아리의 등록은 3분기 중으로 연 1회 실시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집행부에서 정하고 공표한다.
- ③ 신규 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동아리 등록원 1부.
 - 2. 신규 동아리의 회원 명부 1부.
 - 3. 신규 동아리의 동아리 회칙 1부.
 - 4. 신규 동아리의 활동 계획서 1부.
- ④ 신규동아리의 등록,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동아리의 설립 목적이 학교 설립 목적 및 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
 - 2. 동아리의 목적 및 활동 대상이 본교 전교생(승실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3. 학칙 제63조(학생단체) 및 제65조(학생활동의 승인)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 4. 기존 동아리의 활동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5. 회원은 20인 이상으로 특정 과에 편중되지 않아야 하며 적어도 4개 단과대의 인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 6.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⑤ 동아리 등록 시 제출 서류를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본회에 제출하고 1부는 본회의 도장과 본회의 날인을 받아 각 동아리에서 보관한다.
- ⑥ 신규동아리의 등록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2학기 첫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통해 등록이 완료된다.
- ⑦ 의결이 완료된 신규동아리는 준동아리로 구분한다.

제50조 동아리 해체 결의

- ① 동아리 내부적으로 더 이상의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동아리 해체 결의를 할 수 있다.
- ② 동아리 해체 결의를 원하는 대표자는 ‘동아리 해체 결의 및 사유서’[별지3]를 서면으로 본회에 제출한다.
- ③ 동아리 해체 결의는 동아리 회원의 3분의 2 이상 인원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④ 해당 서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필요시 동아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동아리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 ⑤ 해체 결의가 승인된 시점부터 해당 동아리는 등록 취소되며, 그 즉시 해당 동아리와 소속 회원들은 본회의 회원에서 제명된다.

제51조 동아리 명칭 변경

- ① 동아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동아리 회원이 스스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논의 후,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다.
- ② 동아리 명칭 변경을 요청하는 동아리는 ‘동아리 명칭 변경 사유서’[별지4]를 서면으로 본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존 동아리 명칭과 중복되지 아니한다.
- ③ 동아리 명칭 변경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2학기 중 동아리대표자회의에 특별안건으로 회부해 동아리 명칭 변경을 의결한다.
- ④ 동아리 활동은 창립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고, 동아리 활동 목적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생기게 되는 모든 불이익은 해당 동아리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 ⑤ 동아리 명칭 변경은 인가동아리와 정동아리에 한하며, 2년에 한 번 본회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이 거부된 명칭과 명칭 변경 사유는 재심을 요청하지 아니한다.

제9장 활동점수

제52조 목적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들의 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해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리들이 등록 목적과 맞게 활동하는 것을 파악하며 동아리들의 활동을 건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 평가

- ① 활동점수의 평가는 집행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② 세부적인 평가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매월 본회에 제출된 활동보고서와 동아리 활동점수 기준표[별지1]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2. 활동점수는 당해 연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세부적인 평가 기준과 일정은 동아리 활동점수 기준표[별지1]를 따른다.
- ③ 본회는 매월 평가된 결과를 본회의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 ④ 평가된 항목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공지일로부터 5일 내로 본회에 알려야 하며, 해당 기간을 넘긴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다.

제10장 동아리 승격

제54조 동아리 승격 심사의 신청과 기간

- ① 동아리 승격 심사는 매년 4분기 중으로 행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등급별 동아리 승격 심사 신청은 연 1회로 한다.

제55조 정동아리로의 승격

- ① 정동아리로의 승격 심사 대상은 심사 자격을 갖는 모든 준동아리이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등록된 시점을 포함하여 4학기 이상을 필한 신규 등록 준동아리

2. 강등된 시점을 포함하여 2학기를 필한 강등된 준동아리
- ② 정동아리로의 승격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필요시 본회는 관련 서류를 동아리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최근 네 학기 내역의 활동 점수 및 활동 보고서
 2. 최근 네 학기 이내의 징계 내역
- ③ 정동아리로의 승격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의결해 승격이 결정된다.

제56조 인가동아리로의 승격

- ① 인가동아리로의 승격 심사 대상은 심사 자격을 갖는 모든 정동아리이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동아리로 승격된 시점으로부터 6학기 이상을 필한 정동아리
 2. 강등된 시점을 포함하여 4학기 이상을 필한 정동아리
- ② 인가동아리로의 승격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필요시 본회는 관련 서류를 동아리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매 학기 1회 이상의 승실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사업 행사 여부
 2. 동아리 자체의 동아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정기 행사 여부
 3. 1회 이상의 동아리와 승실의 문화를 대외에 알리는 대외행사 여부
 4. 최근 네 학기 내역의 활동 점수 및 활동 보고서
 5. 본회의 행사 및 분과 행사의 참여도
 6. 최근 네 학기 이내의 징계 내역
- ③ 인가동아리로의 승격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학생처의 승인을 통해 결정된다.

제11장 징계

제1절 통칙

제57조 목적

활동이 중단되거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동아리를 강등시키고, 새로운 동아리를 승격시킴으로써 동아리들이 활동에 맞는 지원을 받게 하며,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동아리활동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징계의 내용

제58조 징계의 종류

- ① 징계는 주의, 경고, 동아리방 회수, 강등, 등록 취소로 징계가 나뉜다.
- ②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징계는 중복으로 적용 가능하다.

제59조 주의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는 운영위원회 심의 후 해당 동아리에게 주의를 처분한다.
 1. 동아리대표자회의, 동아리대표자수련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 중 1회 불참하였을 경우
 2. 분과회의에 2회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동아리연합회 대여 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반납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22시 이후 동아리방 내의 고성방가, 소음공해 등의 행위로 다른 동아리에 피해를 준 경우
 5. 기타 동아리 내에서의 경미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동아리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 ② 운영위원회는 주의와 함께 항목당 5점 이내에서 감점 징계를 결정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추가 징계가 필요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추가 징계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 ③ 본조 1항 각 호에 대해서 증거가 확실하여 절차가 불필요한 잘못된 징계일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감점 처분할 수 있다.

제60조 경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는 운영위원회 심의 후 해당 동아리에게 경고를 처분한다.

1. 동아리대표자회의, 동아리대표자수련회, 동아리대표자워크샵 중 3회 불참하였을 경우
2. 공동연습실, 공공시설물 등 교내 시설물 훼손
3. 동아리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동아리방 내에서 흡연 또는 취사를 하는 경우
5. 당해연도 주의 처분을 3회 받은 경우
6. 기타 동아리 내에서 경미한 수준을 넘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문제를 야기하거나, 동아리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본교 규정을 위반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② 운영위원회는 경고와 함께 항목당 10점 이내에서 감점 징계를 결정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추가 징계가 필요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추가 징계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③ 사과문 게시는 징계가 내려진 시점에서 6시간 내에 게시가 되지 않으면 3점의 감점 징계를 내린다. 추가로 6시간 내로 게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6점의 감점 추가징계를 내린다. 12시간 이내에도 게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1조 동아리방 회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 심의 후 동아리대표자회의에 특별안건으로 회부해 동아리방 회수를 처분한다. 단, 제61조 1항 1호, 2호, 3호의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분한다.

1. 준동아리로 강등되는 동아리
2. 제69조에 의해 동아리방 회수 처분을 받은 동아리
3. 당해 연도 동아리 활동 점수가 70점 미만인 동아리
4. 당해 연도에 경고 2회를 받은 동아리
5. 기타 동아리 내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동아리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동아리방 회수를 통보받은 동아리는 30일 이내에 동아리방을 비우고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추가적인 징계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62조 동아리 강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의 경우 동아리 강등 사유가 된다.

1. 한 학기 동안 활동보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동아리 활동여부를 알 수 없는 동아리. 단, 활동내역에는 동아리 설립목적에 맞는 활동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활동내역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판단되는 동아리
3. 동아리 활동 점수가 80점 미만인 동아리
4. 제48조의 1항 재등록기간 내에 제48조 1항 각 호의 해당하는 문서들을 제출하지 않고 제48조의 2항에 명시된 지연 제출 기간에 제출을 완료한 동아리
5. 해당 연도에 경고 3회를 받은 동아리

② 인가동아리는 정동아리로 강등되며, 정동아리는 준동아리로 강등된다. 준동아리가 강등될 시 동아리 등록취소의 사유가 된다.

제63조 동아리 등록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의 경우 본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 심의 후 동아리대표자회의에 특별안건으로 회부해 동아리 등록취소를 처분한다. 단, 제63조 2호, 3호의 경우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분한다.

1. 4회의 동아리대표자회의, 동아리대표자수련회, 동아리대표자워크샵 중 4회를 참석하지 않은 동아리
2. 동아리 등록원을 제출하지 않아 동아리 등록이 되지 않은 동아리
3. 제50조에 따라 스스로 동아리 해체를 결의한 동아리
4. 강등 처분을 받은 준동아리
5. 당해 연도에 경고 4회를 받은 동아리

제3절 징계의 절차

제64조 징계 발의

- ① 징계가 필요한 동아리가 있을 시 제11장 제2절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징계를 처분한다. 심의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이외의 추가적인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하며 결정한다.

제65조 징계위원회

- ① 해당 동아리에 추가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동아리연합회장 또는 분과장 3인 이상의 발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발의 및 심의를 진행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구성된다. 단, 분과장이 공석일 경우, 동아리연합회장이 집행부에서 호선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 ③ 감점, 사과문 게시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동아리방 회수, 강등, 등록 취소의 징계에 대해선 징계위원회의 의결 후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특별안건에 회부해 의결한다.
- ④ 징계 심의에 앞서 반드시 회칙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징계 심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본조 중 어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다.
- ⑥ 심의가 완전히 끝난 사건의 징계에 대해선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 ⑦ 본회에서 처분하는 징계로 개선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학생처 또는 학생생활지도 위원회에 징계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

제66조 재심의 제도

- ① 징계를 받는 동아리는 해당 징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기한은 징계가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1주일이며, 서면으로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한다.
- ③ 재심이는 1번에 한한다.
- ④ 본회는 서류를 받은 뒤 1주일 내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추후 재심의 될 때까지 징계는 무효로 한다.
- ⑤ 재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단,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분된 징계에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7조 동아리조사위원회

- ① 동아리조사위원회는 문제되는 동아리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동아리연합회장과 분과장 2인의 발의로 조직한다.
- ② 동아리조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동아리조사위원회의 구성은 동아리 운영위원회 중 5명
 2. 운영위원회로 불충분할 경우 각기 다른 분과 동아리의 3명 이상 7명 이하의 조사위원을 지원받아 구성한다.
- ③ 동아리조사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동아리에 회계내역을 요구 및 검토할 수 있다.
 2. 활동보고서와 계획서, 동아리연합회 활동내역을 토대로 활동이 저조한 동아리를 추려내어 경고할 수 있다.
- ④ 동아리조사위원회는 조직이 된 이후 해체되기 전까지 매주 한 번은 운영위원회에 활동보고를 한다.
- ⑤ 조사 결과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조사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12장 동아리방

제68조 지급

- ① 동아리방 회수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해 공실이 발생할 경우 동아리방이 없는 동아리에게 동아리방을 지급한다. 단, 준 동아리는 동아리방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지급 기준은 당해 연도와 전년도 활동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동점일 경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최초 등록 시점으로부터 한 번도 동아리방을 지급받지 못한 동아리를 대상으로 1년마다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단, 가점은 정동아리가 된 이후부터 부여한다.
 2. 최근 네 학기 이내의 징계 내역이 더 적은 동아리를 우선하여 지급한다.
 3. 동아리방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신규동아리 중 본회에 먼저 등록된 동아리에 우선하여 지급한다.
 4. 위의 모든 호에서 동일한 조건의 동아리일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동아리방 지급은 당해 연도 활동점수 집계 종료된 이후 결정하며, 당해 연도 마지막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공지한다.
- ④ 동아리방 지급은 본회가 방음벽, 해당 동아리의 분과, 규모, 활동점수와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분배할 수 있다.

제69조 자생

- ① 신규 동아리의 동아리방 획득 기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당해 연도 징계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한 공실 동아리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만 시행된다.
- ③ 운영위원회에서 '회수' 및 '지급'을 결정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연도 활동점수 총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속 분과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2. 동아리방 점유 중인 동아리 중, 활동 점수가 85점 미만일 시 회수 예정 대상이 된다.
 3. 동아리방 미점유 중인 동아리 중 활동 점수가 85점 이상일 경우 지급 예정 대상이 된다.
 4. 전 2호와 3호에 해당 되는 동아리는 소속 분과가 동일해야 한다.
 5. 운영위원회에서 비밀투표로 의결한다.
 6. 투표 전, 회수 및 지급 예정 대상 동아리들은 운영위원회에 입회하여 발표를 진행할 수 있다.
 7. 발표의 양식은 본회가 제공하는 양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7분을 넘길 수 없다.
- ④ '회수' 및 '지급' 대상자 평가 중점 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한다.
 1. 동아리의 지속가능성
 2. 실제 활동 재학생의 규모
 3. 본교 발전에 공헌한 사례
 4. 학생서비스팀 동아리 담당 교직원의 평가
 5. 회계장부
 6. 최근 네 학기 이내의 동아리의 징계 여부
- ⑤ 천재 기타 사변에 의해 동아리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당해 연도 간 본 조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회칙 발효

회칙은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공포한 날부터 발효된다.

제2조 회칙 개정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발의를 하거나 4개 분과 이상과 10명 이상의 동아리 대표자의 발의로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특별안건 처리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 오탈자, 맞춤법 수정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일반 안건 처리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

제3조 제반 사항

본 회칙에 기재되지 못한 사항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사안의 중요성에 토대로 논의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2015. 9. 15)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17)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7)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5)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5)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하며 제61조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소급적용이 이루어진다.

부 칙(2020. 9. 22)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9. 1)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8)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5. 26)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21)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7. 26)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하며 모든 항목은 소급적용이 이루어진다.

부 칙(2023. 11. 16)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0. 01)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1. 12)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동아리 활동 점수 기준표 (2024.03.27. 개정)

1) 가점 규칙

1. 회의 참석

구 분	내 용	점 수	비 고
출석률	동아리대표자회의 4회 출석	40	각 회당 10점 부여
	동아리 분과회의 2회 출석	10	각 회당 5점 부여, 학기당 2회까지 인정
	동아리대표자수련회/워크숍 2회 출석	20	각 회당 10점 부여
합 계		70	

- ① 본회는 회의 출석 결과를 회의가 시행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이의 신청 기간은 공지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7일이며 이의 신청 기간을 벗어난 이의에 대해서는 받지 아니한다.
- ② 본회의 필요에 따라 개최된 임시회의는 점수부여를 하지 않으며, 정기회의를 4회 초과로 개최하였을 경우, 각각의 정기회의 점수를 동등하게 배분하여 총 40점이 되도록 분배한다.

2. 활동보고서

- ① 가점 항목은 활동성, 적극성, 우수성으로 구분하며, 매달 각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에만 점수를 부여한다.
 - 가. 활동성 : 각 동아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발한 활동으로 분과별로 상이하다.
 - 나. 적극성 : 동연행사, 대동제 참여, 교외 행사 및 규모가 큰 활동을 말하며, 분과별로 상이하다.
 - 다. 우수성 : 학교 명예 향상을 이룬 외부 대회에서 입상 및 수상에 해당한다.
- ② 활동보고서 제출 기한은 매월 1일부터 5일까지로 하며, 기한이 지난 뒤 활동보고서 및 회의록의 수정과 제출은 불가능하다.
- ③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본회에서 제시한 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집행부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 동아리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활동보고서의 평가 기준은 분과별로 상이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를 따른다.
- ⑥ 활동보고서 내 활동일시는 활동보고서 제출 기간의 전월에 해당하여야 한다.

학술분과

구 분	내 용	가산점	비 고
활동성	동아리 정기 회의	+1.5	항목별 합계 최대 4점
	동연에 인정 가능한 동아리 홍보 활동	+1	
	동아리 활동목적에 맞는 정기 모임	+0.5	
	동아리 설립 취지에 맞는 봉사활동	+0.5	
	교류전	+0.5	
	외부강사 초빙	+0.5	
	동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날의 게릴라 행사	+1	
	동아리 특성에 맞는 대외 활동	+0.5	
적극성	공모전 및 세미나, 학술대회 출전	+5	항목별 월 1회 최대
	동연에서 인정 가능한 학술 활동 산출물		
	동연행사, 대동제 참여	+5	

우수성	학교 명예 향상을 이룬 외부 대회에서 입상 및 수상	+6	연 3회 최대
-----	------------------------------	----	---------

체육분과

구 분	내 용	가산점	비 고
활동성	동아리 정기 회의	+1.5	항목별 합계 최대 4점
	동연에 인정 가능한 동아리 홍보 활동	+1	
	동아리 활동목적에 맞는 정기모임	+0.5	
	동아리 설립 취지에 맞는 봉사활동	+0.5	
	외부강사 초빙 아카데미	+0.5	
	홍보시범	+0.5	
	외부협찬	+0.5	
	동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날의 게릴라 행사	+1	
	동아리 특성에 맞는 대외 활동	+0.5	
적극성	체육대회 개최	+5	항목별 월 1회 최대
	스킨스쿠버(자격증 취득시)		
	산악부(특정 산행 등반 난도 인정 가능 시)		
	동연에서 인정 가능한 대회참여 결과		
	동연행사, 대동제 참여	+5	
우수성	학교 명예 향상을 이룬 외부 대회에서 입상 및 수상	+6	연 3회 최대

연대사업분과

구 분	내 용	가산점	비 고
활동성	동아리 정기 회의	+1.5	항목별 합계 최대 4점
	동연에 인정 가능한 동아리 홍보 활동	+1	
	동아리 활동목적에 맞는 정기모임	+0.5	
	봉사활동	+0.5	
	외부 강사 초빙	+0.5	
	동아리 설립 취지에 맞는 봉사활동	+0.5	
	동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날의 게릴라 행사	+1	
	동아리 특성에 맞는 대외 활동	+0.5	
적극성	연대 협업 봉사활동	+5	항목별 월 1회 최대
	외부 협찬 행사 진행		
	동아리 설립 취지에 맞는 공모전 참여		
	동연행사, 대동제 참여	+5	
우수성	학교 명예 향상을 이룬 외부 대회에서 입상 및 수상	+6	연 3회 최대

종교분과

구 분	내 용	가산점	비 고
활동성	동아리 정기 회의	+1.5	항목별 합계 최대 4점
	동연에 인정 가능한 동아리 홍보 활동	+1	
	동아리 활동목적에 맞는 정기모임	+0.5	
	신앙 세미나	+0.5	
	선교축제	+0.5	
	연합예배	+0.5	
	동아리 설립 취지에 맞는 봉사활동	+0.5	
	동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날의 게릴라 행사	+1	
	동아리 특성에 맞는 대외 활동	+0.5	
적극성	국내 외 선교여행	+5	항목별 월 1회 최대
	방학 중 수련회		

	동아리 설립 취지에 맞는 공모전 참여	+5	
	동연행사, 대동제 참여		
우수성	학교 명예 향상을 이룬 외부 대회에서 입상 및 수상	+6	연 3회 최대

연행예술분과

구 분	내 용	가산점	비 고
활동성	동아리 정기 회의	+1.5	항목별 합계 최대 4점
	동연에 인정 가능한 동아리 홍보 활동	+1	
	동아리 활동목적에 맞는 정기모임	+0.5	
	동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날의 게릴라 공연	+1	
	동아리 설립 취지에 맞는 봉사활동	+0.5	
	외부강사 초빙	+0.5	
	동아리 특성에 맞는 대외 활동	+0.5	
적극성	동연에서 인정 가능한 외부공연, 정기공연	+5	항목별 월 1회 최대
	동연에서 인정 가능한 연행예술 산출물		
	동연행사, 대동제 참여	+5	
우수성	학교 명예 향상을 이룬 외부 대회에서 입상 및 수상	+6	연 3회 최대

창작전시분과

구 분	내 용	가산점	비 고
활동성	동아리 정기 회의	+1.5	항목별 합계 최대 4점
	동연에 인정 가능한 동아리 홍보 활동	+1	
	동아리 활동목적에 맞는 정기모임	+0.5	
	외부강사 초빙	+0.5	
	동아리 설립 취지에 맞는 봉사활동	+0.5	
	동아리 특성에 맞는 대외 활동	+0.5	
	동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날의 게릴라 행사	+1	
적극성	동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날의 전시회	+5	항목별 월 1회 최대
	동연에서 인정 가능한 창작전시 산출물		
	동연행사, 대동제 참여	+5	
우수성	학교 명예 향상을 이룬 외부 대회에서 입상 및 수상	+6	연 3회 최대

교양분과

구 분	내 용	가산점	비 고
활동성	동아리 정기 회의	+1.5	항목별 합계 최대 4점
	동연에 인정 가능한 동아리 홍보 활동	+1	
	동아리 활동목적에 맞는 정기모임	+0.5	
	동아리 특성에 맞는 대외 활동	+0.5	
	외부강사 초빙 아카데미	+0.5	
	동아리 설립 취지에 맞는 봉사활동	+0.5	
	동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날의 게릴라 행사	+1	
적극성	연대 행사 주최 및 참여	+5	항목별 월 1회 최대
	외부 협찬 행사 진행		
	교내·외 대회 개최 및 교외 대회 출전		
	캠페인 주최 및 진행		
	동아리 설립 취지에 맞는 공모전 참여		
	동연행사, 대동제 참여	+5	

우수성	학교 명예 향상을 이룬 외부 대회에서 입상 및 수상	+6	연 3회 최대
-----	------------------------------	----	---------

3. 세부사항

- ① 동아리 정기 회의 및 동연에 인정가능한 동아리 홍보 활동은 대면, 비대면 활동 모두 인정한다. 이외의 항목은 대면 활동만을 인정한다.
- ② 점수 항목별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과거에 점수를 부여한 홍보 글은 재차 점수 인정이 불가하다. 하지만 포스터 상의 변경점이 있거나 내용의 변경이 집행부에서 인정가능한 경우 홍보 활동으로 점수 부여한다.
- 나. 월별 활동에 대해 활동에 참여하는 총 인원이 8명 이상이어야 점수를 부여한다. 단, 개별 활동에 대한 중복인원은 허가하며, 각 활동에 참여한 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다. 활동보고서에 기재한 모든 활동에 대해 활동 참여 인원과 활동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1장 이상 첨부하여야 한다.
- 라. 동아리 정기 회의의 경우 월 1회 점수 인정 가능하며, 활동보고서에 회의한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회의록과 활동보고서의 인원이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점수 부여한다. 이를 비대면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활동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시가 활동보고서 내 회의 일시와 일치해야 한다.

2) 감점 규칙

- ① 감점사항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안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처리
- 나. 2회 적발 시 경고 부여
- 다. 3회 이상 적발 시 3점의 추가 감점과 추가적인 징계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

내 용	감점	비 고
• 학교 재산의 불이익 및 불명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10	감점 및 징계대상
• 교내 음주로 본교의 주의를 받는 경우	-3	1회 적발시
	-5	2회 적발시
• 기타 본교의 계도조치 및 주의에 불응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	
• 동아리연합회 물품 분실 및 반납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	반납기간 초과
	-5	물품 분실 (배상책임)

동 아 리 지 원 금 신 청 서

제출일: 년 월 일

동아리명		결 재	동아리연합회장					
행 사 명								
주요순서 및 내 용								
일 시	년 월 일 시 에서		장 소					
	년 월 일 시 까지							
참가대상		대표성명	(인)	학과(부)		학 년		
계좌번호								
지 출	내 역			금 액				
※ 주의사항								
1. 신청 시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2. 영수증은 회칙 41조 5항에 명시된 영수증만 가능합니다.								
3. 본 서류를 인쇄하여 자필로 작성한 뒤 영수증과 함께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합니다.								
4. 신청서의 내용이 부적절할 경우 지급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아리 해체 결의서

동아리명:

소속 분과:

대표자 성명:

대표자 연락처:

상기 본동아리-----은 ----년 월 일부로 동아리 해체를 결의합니다.

-----_(서명)

년 월 일

송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동아리 명칭 변경 사유서

동아리명:

소속 분과:

대표자 성명:

대표자 연락처:

동아리 명칭 변경 사유:

상기 본동아리_____은 _____년 _____월 일부로 동아리 명칭 변경을 신청합니다.

_____(서명)

년 월 일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